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제노동 위반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및 제한 근거 마련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970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강제노동 위반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및 제한 근거 마련	3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7. 15.

3. 회 부 일 : 2026.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면허와 면허·허가·신고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의 위반자 등에 대한 면허의 결격사유와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면허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어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어업분야 노동자의 47%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인권 및 노동관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어 국가 간 무역 제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선원법」 등에

따른 처벌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강제노동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어선)이자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실효적 제재가 미흡하여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9조, 제33조).

Ⅲ. 검토의견

1. 강제노동 위반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및 제한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9조 및 제33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u><신설></u>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③ 제1항제7호부터 <u>제9호까지</u>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u>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10호까지</u>----- -----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조¹⁾는 ①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1) 「수산업법」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

②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③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등의 경우를 어업면허²⁾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3조³⁾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사유(제33조제1항제1

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어업면허는 ①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②마을어업에 대하여 해당하고, 마을어업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에, 정치망어업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 수협에게 면허함

*①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수산업법」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호~제9호)를 명시하면서, 제34조⁴⁾는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어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어업⁵⁾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22년~'26년) 수산분야 강제근로(외국인 포함) 적발 현황 >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금지), 제8조(폭행의금지)

(기준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연도별	위반건수	관할관서	업종	피해자 국적	적발내용
2022	1건	서산	어선	한국인	제8조(폭행)
2023	1건	군산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4	4건	군산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여수	어선	미상(익명)	제8조(폭행)
		여수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여수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5	1건	목포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6.6	2건	광주	염전	한국인	제7조(강제노동)
		광주	염전	한국인	제8조(폭행)

※ 고용노동부 제공, 해양수산부 작성·제출

4) 「수산업법」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선·양식장·염전 등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폭행이 수산물 수출 금지 등 무역 제재로 이어질 우려⁶⁾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등 강제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마련이 필요해 보임.

<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강제노동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선원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총톤수20톤 미만의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근로기준법」 적용	총톤수20톤 이상인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선원법」 ⁷⁾ 적용

6) 미국은 2026년 7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에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도 강제노동 결과물의 역내 시장 출시·수출을 금지하는 규정(Regulation (EU) 2024/3015)을 2024년 12월 12일 발효시켜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7)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업면허·허가를 제한·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같이 제33조제1항제10호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를 신설할 경우 현행법 제34조제6호에 따라 어업면허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며,

허가어업의 경우에도 준용규정(제50조⁸⁾)이 제33조 및 제34조제6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33조제1항제10호 신설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취소도 가능하게 됨.

【 수산업법 상 어업면허·허가 개요 】

◆ 면허어업

- (어업면허)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일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행정법학상의 특허에 해당
 - (면허어업의 종류)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 (마을어업)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얇은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 * 마을어업 : 최간조시의 평균수심이 5m이내(강원·경북·제주는 7m 이내)

8) 「수산업법」

제50조(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어류 등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면적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

* 대형: 10헥타르 이상, 중형: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 소형: 5헥타르 미만

◆ 허가어업(=연근해어업)

- (어업허가) 일반인에게 과해진 어업의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에서 어업을 할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관청의 처분
- (허가어업의 종류)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구분
 - (근해어업)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전국을 조업구역으로 함
 - (연안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받은 시·도 관할수역을 조업수역으로 함
 -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5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자료 : 해양수산부

□ 다만, 안 제9조제6호(면허의 결격사유 추가)와 관련하여 현행 결격사유와의 균형성 문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 제9조는 수산관계 법령(「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②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③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으로 구분하여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안 제9조제6호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하한액을 두지 않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모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산관계 법령 위반 보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을 더 엄격하게 적용⁹⁾하도록 하는 구조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관련성이 높은 법률 위반으로 한정하는 것이 「행정기본법」 제16조의제2항¹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자유형과 벌금형을 나누어 서로 다른 호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도의 준범의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의 일반원칙¹¹⁾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강제노동·폭행 관련 제재의 수준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9조 제3호·제4호·제5호와 같이 ①벌금형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하한을 두거나, ②금고 이상의 형과 벌금형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호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예컨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경우 수산관계 법령 위반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됨

10)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한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1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372~373

- 둘째, 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에 벌금 이상의 형을 포함할 경우 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합범에 대하여는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범하여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특정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경우 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원칙이라는 의견¹²⁾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³⁾.

< 벌금형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 관련 형의 분리 선고 입법례 >

「유아교육법」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¹⁴⁾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1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373

13) 현행법 제10조(형의 분리 선고)는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9조제6호를 신설할 경우 분리 선고 인용 조항에 제9조제6호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①결격사유를 구성하는 형벌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벌금형”의 3단계로 구분¹⁵⁾하고, ②벌금형의 최소

14)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5) 현행 「수산업법」 제9조 제3호,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 제5호 규정과 같이 3단계로 구분 반영 (해양수산부 의견)

기준액을 500만원¹⁶⁾으로 정하며, ③결격사유에 벌금 이상의 형을 포함할 경우 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의견¹⁷⁾을 제시하였음.

□ 다음, 안 제33조제1항제10호(면허어업의 제한)와 관련하여 면허 취소 처분 요건의 명확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3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할 경우 면허어업의 제한과 함께 법 제34조제6호에 따라 어업면허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면허의 제한 또는 어업면허의 취소 사유가 ①벌금 이상 형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지, ②단순한 위반 사실의 적발만으로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침익적 처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해양수산부는 법 위반 사실이 판결로 확정될 것을 어업 면허 제한·정지 등의 요건으로 할 경우, 판결 확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강제노동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16) [해양수산부 의견]

(벌금 최소 기준액)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벌금액은 5천만원, 그 10%인 500만원을 최소 금액 설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 관련, 현재 「수산업법」 제9조 제3호와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 제5호 벌금 최소 기준액은 100만원
수산업법(제108조), 수산자원관리법(제65조) 등의 일반 위반행위 벌금 상한 1천만원의 10% 수준(무허가 어업·수산물 채취는 3천/2천만)

17) [해양수산부 의견]

(분리선고 일괄 반영) 다른 법률 위반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의 결합에 따른 벌금액 증가 등으로 부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황 방지 필요 → 분리 선고 규정 일괄 마련

* 현행 「수산업법」(제10조), 「양식산업발전법」(제12조의2)는 해당 법률이 아닌 수산관계법령 위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되, 분리 선고 규정 有

현행법령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면허 제한이나 정지 이전에 선제적으로 위반 어선의 항구 계류나 출·입항 제한도 규정¹⁸⁾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위반의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할 경우 이러한 처분의 발동까지 법 위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바,

어업 면허 제한·정지 등의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강제 근로 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하는 의견을 제시¹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강제노동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 어업면허·허가를 제한·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수협중앙회는 현장의 복잡한 노무 관리 실정과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선주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므로 ①벌금형의 기준 상향(예: 금고 이상

18) 「수산업법」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②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19) [해양수산부 의견]

(취소·제한·정지사유) 해당 업에서 강제노동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제재조치 필요 → 적발된 경우로 규정
⇒ 현행 「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입법례*를 다른 5개 법안에 확대 적용하는 취지

*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 ②상습·고의 위반자에 한정 적용, ③단계적 행정처분 도입 및 선주 면책 조항 신설 등 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강구수협),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이미 부과되므로 어업면허 자체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면허권자는 물론 고용된 무고한 근로자들의 생계수단까지 차단하는 이중 처벌에 해당되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굴수하식수협)²⁰⁾.

문 의 처

02)6788-5419

20)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발의하려는 의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지만, 재정소요와 관련이 없는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1. p.30.).

□ 면허어업

- (어업면허)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일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행정법학상의 특허에 해당
- (면허어업의 종류)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 (마을어업)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얇은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 * 마을어업 : 최간조시의 평균수심이 5m이내(강원·경북·제주는 7m 이내)
 -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어류 등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면적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
 - * 대형: 10헥타르 이상, 중형: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 소형: 5헥타르 미만
- (어업권) 어업면허에 따라 부여받은 권리인 어업권은 어업허가와 달리 물권으로서 사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10년

□ 허가어업(=연근해어업)

- (어업허가) 일반인에게 과해진 어업의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에서 어업을 할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관청의 처분
- (허가어업의 종류)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구분
 - (근해어업)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전국을 조업구역으로 함
 - (연안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받은 시·도 관할수역을 조업수역으로 함
 -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5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 (어업허가 유효기간) 허가기간은 5년이며, 근해어업은 ‘23~‘27년, 연안·구획어업은 ‘24~‘28년으로 동일

참고 2

어업 고용인력 및 외국인력 체류 현황

□ 어업 고용인력 현황

※ 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결과

구분 (단위:명)	2023			2024			2025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64,409	39,167	25,242	63,778	34,508	29,270	68,504	36,626	31,878
어선어업	45,708	30,889	14,819	39,575	23,609	15,966	41,640	25,354	16,286
양식업(소금)	18,701	8,278	10,423	24,203	10,899	13,304	26,864	11,272	15,592

□ 외국인력 체류 현황

구분(단위: 명)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14,929	18,528	25,242	29,270	31,878
계절근로제(E-8/법무)	335	579	3,852	5,720	7,408
고용허가제(E-9/노동)	5,678	8,707	11,191	13,282	14,436
연근해어업(20톤미만)	2,250	3,424	4,620	5,698	6,252
양식업	3,425	5,279	6,567	7,579	8,174
소금채취업	3	4	4	5	10
선원취업제(E-10/해수)	8,916	9,242	10,199	10,268	10,034

□ 외국인력 제도 비교('26)

구분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제(E-10)
근거법률	출입국관리법(법무부)	외국인고용법(노동부)	선원법(해수부)
사후관리	지자체	산업인력공단, 고용센터	수협(선원관리업체 20개)
도입업종	해조류채취·가공, 어류 가공 (계절성 원시 가공에 한함)	어선어업(20톤 미만) 양식업, 소금채취업	어선어업(20톤 이상)
체류기간	90일(최장 240일) * 1회 재입국 가능(+240일)	3년(최장 4년 10개월) * 1회 재입국 가능(+4년 10개월)	3년(최장 4년 10개월) * 1회 재입국 가능(+4년 10개월)
송입국가	① 지자체와 MOU 체결국 ② 결혼이민자 가족	인니,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인니,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쿼터인원	10,581명	8,500명	22,000명

※ (E-9) 신규인력+기존 연장인력 포함 / (E-10) 선원취업제 불법체류자(10,000명 추정) 제외 인원

참고 3

어업분야 비자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구분	계절근로자(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소관 법령	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외국인고용법	선원법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주무 부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사후 관리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센터	수협(선원관리업체(18개))
인원 배정 협의	관계부처 배정심사협의회 (법무부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조실장 주재)	노사,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정부 결정 (해수부 승인 → 법무부 최종결정)
도입 업종	어류 가공, 해조류 가공 (계절성이 있는 원시적 가공에 한함) ※ 해조류 채취 어선승선 허용	연근해어업(20톤 미만),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연근해어업(20톤 이상), 여객선, 상선
연령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만 18세 이상 50세 이하
체류 기간	90일(최장 240일) * 1회 재입국 가능(+240일)	3년(최장 4년 10개월) * 1회 재입국 가능(+4년 10개월)	3년(최장 4년 10개월) * 1회 재입국 가능(+4년 10개월)
송입 국가	① 지자체 간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 ② 결혼이민자 가족	인니,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인니,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근로 조건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선원법 및 노사간 단체협약 적용
배정 인원 (‘26)	6,725명 (‘26년 상반기)	7,000명	22,000명 (불법 체류자 포함)

참고 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 주요 개정안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① 「수산업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제6호 신설>	6.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1항제10호 신설>	10.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②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제6호 신설>	6.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1항제10호 신설>	10.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③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24조(허가의 제한) <제3호 신설>	3.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 항	개정안
제26조(허가취소 등) <제1항 개정>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근로강요 행위의 금지) <제1항 개정>	제49조의2(지원 자금의 회수) ①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④ 「수산물유통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1항제2호 신설>	2.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⑤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제1항 개정>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⑥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제1항제18호 신설>	18.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8조(결격사유) <제1항제4호 신설>	4.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강제노동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선원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근로기준법」 적용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선원법」 적용

참고 5

강제노동 금지 관련 규정 입법례

□ 선원법

- (징역 또는 벌금)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행위 강요 시
- (과태료) 선박소유자가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 선원법 >

【강제근로 및 괴롭힘 금지】

- ◎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 제25조의3(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선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 ◎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생략)

####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 ◎ 제17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소금산업진흥법

- (허가취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행위 강요 시

#### < 소금산업진흥법 >

- ◎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호~5호 생략)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